세월호 사건의 적정 관할 법원 및 담당재판부 검토

2014. 5. 7. 기획조정실

1. 검토 배경

▣ **세월호 사건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최초 기소 ⇨ 5. 16.(금) 무렵 예상**

- 1차 기소시점 예상: 구속선원 15인 중 **선장 포함 1차 구속 3인의 구속 만기일 5. 16.(금)**
- 후속 기소시점 예상: 과적·고정불량·증축 관련 청해진해운 관계자 ⇨ 5. 2. ~ 5. 4.까지 3인 구속, 5. 4. 1인 체포 ⇨ **5월 말 ~ 6월초까지 기소 완료 예상**

▣ **세월호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가 예정됨에 따라, 적정 관할 법원 및 담당재판부를 검토할 필요**

2. 세월호 침몰 사건 관련 예상 기소 인원 ⇨ 20 ~ 25인

▣ **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인(전원 구속)**

- 급격한 변침 및 구조의무 불이행

▣ **청해진해운 관계자 4인(3인 구속, 1인 구속영장 청구)**

- 과적 및 화물고정 불량

▣ **청해진해운 관계자 수인**

- 불법 구조변경을 통한 선실 증축

3. 세월호 침몰 사건 적정 관할 법원

가. 관련 규정

1) 토지관할

◈ 형사소송법 ◈
제4조(토지관할)
① 토지관할은 범죄지, 피고인의 주소,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.

▣ 범죄지

-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한 장소로, 실행행위지, 결과발생지, 중간현상발생지 포함

▣ 피고인의 주소, 거소

- 주소: 생활의 근거되는 곳 / 거소: 다소 계속적으로 거주하는 곳

▣ 피고인의 현재지

- ‘공소제기 당시’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

2) 토지관할의 병합 - 관련사건

◈ 형사소송법 ◈
제5조(토지관할의 병합)
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.
제11조(관련사건의 정의)
관련사건은 다음과 같다.
1. 1인이 범한 수죄
2.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
3.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
4. 범인은닉죄, 증거인멸죄, 위증죄,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

▣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

- 공동정범, 교사범, 종범, 필요적 공범, 합동범, 공동과실범, 상해의 동시범 포함(1978. 10. 10. 선고 78도2225 판결의 원심 중 판시 내용)

나. 관할권 있는 법원

▣ 1 **목포지원 ⇨ '범죄지', 선원 및 물류팀 등 구속자들의 '현재지' 관할**

- 전남 진도군 병풍도 북방 1.8해리 해상에서 사고 발생 ⇨ '범죄지' 관할
- 목포교도소에 선원 15명 및 물류팀 3명 구속수감 중 ⇨ '현재지' 관할

▣ 2 **인천지법 ⇨ '범죄지', '관련사건' 관할**

<table>
<tr><th colspan="2">직책</th><th colspan="5">구속영장상의 죄명</th><th>관할결정기준</th></tr>
<tr><td colspan="2">청해진해운 물류팀 4명</td><td>업무상과실치사, 선박안전법위반</td><td rowspan="3">업무상과실 선박매몰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범죄지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선박직</td><td>선장</td><td></td><td rowspan="2">특가도주선박, 선원법위반, 유기치사,</td><td rowspan="3">수난구호법 위반1)</td><td></td><td rowspan="2">관련사건</td></tr>
<tr><td>1차 구속 2인</td><td></td><td>업무상과실치사</td></tr>
<tr><td>이후 구속 12인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유기치사</td><td>관련사건</td></tr>
</table>

- 청해진해운 물류팀 ⇨ 선적지는 인천항 ⇨ '범죄지' 관할
- <u>선장 포함 1차 구속 선원 3인</u> ⇨ 청해진해운 물류팀과의 <u>업무상과실 선박매몰죄의 공동정범</u>으로서 '관련사건' 관할('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')

> ◈ 참고판례 ⇨ 대법원 1997. 11. 28. 선고 97도1740 판결(성수대교 붕괴 사건) ◈
> ▷ 교량붕괴에 있어서의 과실에 의한 공동정범 성립여부(적극)
> - 성수대교와 같은 교량이 그 수명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건설업자의 완벽한 시공, 감독공무원들의 철저한 제작시공상의 감독 및 유지·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철저한 유지·관리라는 조건이 합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, <u>위 각 단계에서의 과실 그것만으로 붕괴원인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, 그것이 합쳐지면 교량이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예상</u>할 수 있고, 따라서 위 각 단계에 관여한 자는 전혀 과실이 없다거나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교량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<u>붕괴에 대한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다.</u>

- <u>이후 구속 선원 12인</u> ⇨ 선장 포함 1차 구속 선원 3인과의 <u>수난구호법</u>

1) 구호조치 미이행시 성립

위반의 공동정범으로서 '관련사건' 관할('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')

다. 적정 관할 법원 ⇨ 인천지법

적정 관할법원 결정시 주요 고려요소는 아래와 같다

▣ 목포지원의 인적·물적 시설의 한계

- 기소 인원만 20 ~ 25명으로 예상되고, 다수의 피해자 유가족 등의 방청이 예상되는 세월호 사건을 처리하기에는 지원 단위 규모인 목포지원의 인적·물적 시설이 부족함
- 그 밖에 전문심리위원, 재판연구원 등의 지원을 위해서도 서울 인근에 위치한 인천지법이 바람직함
- 다만, 국민참여법정으로의 개조에 따라, 인천지법의 형사대법정의 수용 인원이 52석에 불과하나, 인천지법 대회의실 등에서의 중계를 통하여 다수의 방청객들 수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

▣ 피해자 절차참여 편의성 및 정보접근성 제고

- 인천지법과 목포지원은 모두 이 사건과 지역적 관련성이 있는 토지관할 법원으로서 그 사이에 우열이 없고, 오히려 피해자 유가족들의 실질적 절차참여의 편의성과 재판내용에 대한 정보접근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안산에서 원거리에 소재한 목포지원보다 인천지법이 비교우위에 있음

▣ 불공정한 재판에 대한 우려 無

- '현재지' 관할법원이 아닌 인천지법에서 재판한다고 하여도 불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우려가 없고, 목포지원은 현재지일뿐, 인천지법보다도 지역적 연관성이 없음

▣ 인천지검의 유○○ 전 회장에 대한 수사 진행

- 현재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이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유○○ 전 세모그룹

회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에 있고, 유 전 회장의 최측근인 '다판다' 대표 송○○씨를 배임 혐의로 구속함

▣ **피고인 측의 관할위반 신청 가능성 낮음**

● 토지관할이 없으면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진술하기 전에 관할위반의 신청을 한 때에 한하여 관할위반의 판결을 하게 되는바(형사소송법 제331조), 가사 인천지법에 토지관할이 없다고 하더라도, 사건의 특성상 피고인 측이 관할위반의 신청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임

▣ **최근 언론 동향**

● 조선일보 '이○○의 동서남북' ⇨ '세월호 공범들, 같은 법원서 재판하자'

4. 세월호 사건 인천지법 적정 재판부 배당 방안

가. 기본 전제

▣ **유○○ 전 회장 측의 개인비리 사건 ⇨ 일반 사건배당 원칙에 따라 배당**

● 개인비리가 세월호 침몰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, 일반 경제범죄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, 유○○ 전 회장 측의 개인비리 사건에 관하여는 일반 사건배당 원칙에 따라 배당할 필요 있음

▣ **세월호 침몰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형사사건 ⇨ 적정 재판부 배당 방안 검토 필요**

● 선박직 15인과 청해진해운 물류팀 4명에 대한 형사사건

나. 관련 규정 ⇨ 「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」

▣ **부득이한 사정시 관계 재판장과의 협의 이후 특정 재판부 배당 가능**

● 업무부담의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는 등 배당방법에 따르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계되는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친 후

특정한 재판부에 배당할 수 있음

◈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◈

제18조(배당의 방법)

② 사건배당은 사무분담에서 정한 재판부의 배당순서에 따라 사건 1건씩을 각 재판부에 배당순위번호의 순서에 따라 배정하여 행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다음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1. 전문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가 설치된 법원은 전문사건에 대하여는 각 전담재판부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배정한다.
2. 재판부 사이의 사무분담비율이 다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사건을 배정한다.
3. 먼저 배당된 사건의 관련사건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.

③ 업무부담의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는 등 제2항에 의한 배당방법에 따르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계되는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친 후 이와 다른 방법으로 배정할 수 있다. 협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각급법원의 내규로 정한다.

제24조(배당의 절차)

③ 사건배당 주관자는 자동배당 실행 전에 제18조 제2항 제3호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건을 특정한 재판부에 배당하거나 배당배제를 할 수 있다.

다. 적정 재판부 배당 방안

1) 제1안: 일반 형사재판부 배당

▣ 형사합의부 구성: 2.5개 재판부

- 제12형사부(1): 이○○(부산 ○○고, 서울대 법대, 26기), 장○○(38기), 우○○(39기)
- 제13형사부(1): 김○○(대구 ○○고, 고대 법대, 25기), 진○○(37기), 이○○(39기)
- 제14형사부(0.5): 심○(서울 ○○고, 서울대 법대, 24기), 장○○(38기), 황○○(39기)

▣ 장점

- 현행 「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」에 따른 원칙적인 배당의 모습으로서, 불필요한 오해를 살 우려 없음

● 수석재판부에 비하여 형사재판경험 多

- 이○○ 제12형사부장: 2013년 인천지법에서 변형부장으로 형사단독재판장 업무 이후 2014년 형사합의부장으로 보임

- 김○○ 제13형사부장: 인천지법에서 2년째 형사합의부장으로 보임

- 형사합의부의 배석은 6·4 지방선거 관련 선거범죄 처리를 위하여 모두 형사재판 유경험자로 배치됨

▣ 단점

● 사법부가 세월호 사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강구한다는 대외적 홍보효과가 거의 없음

2) 제2안: 수석재판부 배당

▣ 수석재판부 구성

● 신○○(19기), 김○○(35기), 하○○(36기)

	신○○ 수석부장판사 주요 경력
(사진)	2002.02.18~2003.02.18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2003.02.19~2004.02.17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2005.02.21.~2005.08.19.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2005.08.20.~2006.02.19. 사법연구, 사법연수원 2006.02.20.~2006.12.31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사법정책제1심의관 2007.01.01.~2007.02.20.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사법정책총괄심의관

● 현재 사무분담은 파산부, 가사부(파기환송 사건만 담당)

▣ 장점

● 고등법원 부장판사인 수석부장판사가 사건을 담당함으로써, 보다 공정하고 신중한 사건 처리 가능

●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안에 따르는 부담이 적으면서도, 사법부가 세월호 사건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알릴

수 있음

▣ 단점

● 지금까지 선례가 전무하여 향후 법원의 어느 정도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 있음

● 형사사건에 대한 전문성 부족 우려

- 신○○ 수석부장판사: 2005. 2. ~ 8.까지 대전지법에서 6개월 형사단독재판장 경험 이후 형사재판경험 없음

- 수석재판부 배석판사: 형사재판경험 없음

● 파산부 업무 담당할 대체 재판부 물색 곤란

- 수석재판부가 파산부를 담당하고 있는데, 수석재판부에서 세월호 사건을 배당받아 재판진행시, 파산부 업무의 전문적 특성상 마땅한 대체 재판부를 물색하기 어려움

3) 제3안: 특별재판부 구성 및 배당

▣ 특별재판부 구성(안)

- 재판장: 수석부장판사 신○○

- 배석판사(안): 신○○(민사2단독, 28기), 윤○○(민사7단독, 29기), 정○○(파산3단독, 30기), 강○○(형사2단독, 31기), 권○○(민사3단독, 31기), 김○○(형사12단독, 31기), 최○○(민사4단독, 31기), 이○○(가사3단독, 법원 임관 수석, 34기), 송○○(민사28단독, 35기)

▣ 장점

● 사법부가 세월호 사건에 대하여 관심과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대외적 홍보 효과 극대화 가능

● 경력 있는 단독판사들을 배석판사로 구성함으로써, 보다 신중하고 치밀한 심리 가능

▣ 단점

● 특정 사건의 처리를 위한 특별재판부 구성의 전례가 없어 향후 법원의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 있음

● 특별검사기소사건,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경우 정치권에서 이해득실에 따라 기존 재판부 배제 목적으로 특별재판부 구성을 주장하는 일종의 forum shopping 우려

4) 정책 결정: [제1안], [제2안], [제3안]

5. 인천지법 수석재판부 배당시 대외적 명분과 설득 논리

▣ 사건의 성격상 신중한 심리 필요

● 정치적 고려에서가 아니라 일반국민의 정서와 관심도, 사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법리·양형에 있어 신중한 심리가 필요함

- 대국회나 대언론 차원에서도 사법부가 세월호 사건의 공정하고도 신중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음

▣ 형사재판부 배당시 일반 형사사건의 중대한 지연 초래

● 세월호 사건은 집중심리를 통한 신속한 사건처리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, 기존 2.5개의 합의재판부 중 어느 한 재판부에서 담당하는 경우 이미 배당되어 있는 일반 사건 처리에 중대한 지연을 초래할 우려 있음

▣ 비임의적 사건배당에 대한 대내외의 비판 가능성 낮음

● [대외] 정치적 사건과는 달라 재야에서 작위적 사건배당에 대한 비판제기 가능성이 낮고, 만약 재야에서 비판을 제기한다고 하여도, 사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론의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단편적 시각에 기한 부적절한 비판이라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 높음

● [대내] 각급 법원 법관들의 비임의적 사건배당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할

수도 있으나, 각급 법원 사무분담 내규 등에 '대형 재난사고' 등의 경우에 한정하여 수석재판부에 배당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, 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음

▣ 일반 형사재판부의 과중한 심적 부담

- 국민적 관심의 집중과 고도의 긴장감 때문에 일반 형사재판부의 경우 과중한 심적 부담을 느낄 수 있고, 이는 사건의 공정·신속한 처리에 저해요소로 작용할 여지 있음

6. 인천지법 수석재판부 배당시 필요 후속조치

▣ 인천지법 형사합의부 증설 및 수석재판부 사무분담 변경

- 현재 인천지법 수석재판부의 사무분담에는 형사합의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
- 1형사합의부를 증설하고, 2관계되는 재판부의 의견을 들어 수석재판부의 사무분담 변경 필요

◈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◈

제6조(사무분담의 변경)

①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재판부의 의견을 들어 확정된 법관 등의 사무분담을 변경할 수 있다.

1. 재판부의 증설 또는 폐지가 있는 때
2. 일부 재판부의 사무가 과다하여 현저히 사무분담의 균형을 잃게 된 때
3. 일부 재판부의 법관 등이 장기간에 걸쳐 사무처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
4.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4조(사무분담의 확정)

④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재판장인 법관의 본안사건에 관한 사무분담을 제3항 제1호의 기간 안에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법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원장은 소속 법원장을 경유하여야 한다.

▣ 고등법원 소재지 지법 및 인천 등 주요 경인지역 법원의 형사합의부 증설 및 수석재판부 사무분담 변경

- 향후 세월호 사건과 유사한 대형 재난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

여, 사전에 고등법원 소재지 및 인천 등 수도권 소재 대규모 지방법원의 수석부의 사무분담에 형사합의부를 포함시켜 둘 필요 있음

● [참고] 고등법원 소재지 지법 및 인천, 수원지법 수석부 현황

	서울중앙 (형사수석부)	대전지법	대구지법	부산지법	광주지법	인천	수원
재판장 (기수)	임○○(17)	허○○(18)	정○○(17)	김○○(17)	이○○(18)	신○○(19)	오○○(19)
형사사건 담당여부	○ (형사신청 합의사건)	× (법인회생·파산사건)	× (법인회생·파산사건)	× (민사신청 합의사건)	× (법인회생·파산사건)	X (법인회생·파산,가사)	O (형사합의, 법인회생·파산사건)